

Demand supply and Merchandising of U.S. Upland Cotton

(4) 미국 면화정책

전술한 미면의 생산적 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면의 시세변동이 세계의 면화시황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 또한 이 미면시세는 미국정부의 면화정책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면의 가격 추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입장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면화정책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식량 및 농사법(The Food and Agriculture Act)

이 법은 1965년 11월 3일에 발효시행된 것으로서 잉여농산물의 C.C.C. 재고량의 감소, 이 농산물의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가격경쟁 및 안정, 그리고 농민의 수익을 일정 수준까지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면화에 관련된 이 법의 주요부분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소 경작해당면적(Acreage Allotment)을 과거 기준에 의거 1,600Acre로 제한유지한다.

(2) 내수용 경작해당면적은 총경작할당면적의 65% 이하로 제한한다.

(3) 이 법에 동조하는 농민에게는 차기 면화년도의 추정 시장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의 가격지지융자(Price Support Loan)를 지급한다. 1966년도의 융자가격은 MID 1"에 대하여 봉도당 ₩21로 한다.(Average Location으로)

(4) 이 법에 동조하는 농민은 1966년도에는 자기의 경작할당 면적중 87.5% 한도내에서만 경작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규정한다. 즉, 이 비율은 차기면화년도에는 농무장관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다.

(5) 이 법에 동조하는 농민에게는 내수용 경작할당면적에서 생산된 면화에 대하여 최소한 봉도당 ¢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즉, 용자가격에 보상금을 가산한 금액을 허용경작면적에 대한 수확예상고를 승한 Parity 가격의 최소한도 65%선과 대등한 금액이어야 한다.

(6) 또한 유체경작지에 대해서도 상기 Parity가격의 25% 한도율에서 보상받는다.

(7) 이 법에 동조하는 농민은 자기 경작할당면적을 최대한도 35%까지 줄일 수 있다.

(8) 이 법에 동조하지 않는 농민이나 경작할당면적을 초과해서 생산하는 농민이 수확한 면화는 전부 수출하여야 한다. 즉, 1966년도에는 전미국의 경작할당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 면적은 25만 Acre로 한다.

(9) 10 Acre말단의 경작할당면적 혹은 3,600봉도말단의 수확량이 예상되는 농민에게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0) 1933년에 제정된 경작지 조정법(Cropland Adjustment program)에 의거 1966년을 기점으로 하여 5년 내지 10년 계약으로 생산을 포기하고 유체농지로 할 수 있다.

(11) 보상금은 현물지불(P.I.K., Payment-in-kind)로 하되 C.C.C.는 수급자 요청에 따라 현물지불정권(Marketing Payment-in-kind certificate)을 줄 수 있다.

(12) 만일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경우 C.C.C.는 수요와 공급간의 차량을 세계시장가격에 준하여 무제한 조작한다.

(13) 이 법은 1966년에서 1969년간에 식부하여 수확된 면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Food and Agriculture Act가 시행초년도인 1966년에 목적했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첫째, 1966년도 수확면의 시장시세가 호조를 보여 특히 1 1/16"이상의 장섬유면의 가격은 강세였다. C.C.C. 판매중이 대폭 늘어 활기를 회복하였으며 판매가격도 용자가격보다 봉도당 ₩ 1이상이나 높았다. 결과적으로 C.C.C.판매가 1966년도 수확면화의 시장성 및 가격구조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을 줌이 없이 경쟁적인 가격으로 적정량을 공급소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잉여재고가 예기했던것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다. 1966~67면화년도기초인 1966년 8월 1일 현재의 잉여이월량이 1,700만표나 되었으나 (정부재고는 1,450만표) 1967~68면화년도기초인 1967년 8월 1일에 가서는 1,200만표로 감소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재고는 1/3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셋째, 미면의 판로가 보다 신장되어가고 있다. 1965~66년도의 수출량 290만표보다 70%나 증가한 500만표가 1966~67년도에는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공장 수요도 1950~51이래 최고량인 950만표가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66년도의 성공적인 결과에 뒤이어 준용될 1967년도의 면화 생산조정계획(Cotton Production control Program)을 보면 1966년도 보다 200만표나 많은 1,220만표를 수확계획량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산계획은 금기 수확량이 9,627,000표에 불과한 감량 때문에 잉여재고량이 대폭 줄어든데 기인한다. 이 1967년도의 Program에 대한 찬부를 묻기 위하여 12월 5일부터 9일까지 투표가 행하여 지는바 2/3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이 Control Program이 확정 시행된다.

이 Program에 동조하는 농민에게는 전년도와 상이한 울의 용자가격 및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용자가격은 전년도의 ₩21에서 ₩20.25를, 보상금은 전년도의 ₩9에서 ₩11.53를 받게 된다.

2. 가격지지제도(Price Support System)

전항에서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면에는 가격지지정책에 따라 매년 용자가격(Price Support Loan 혹은 지지가격 – Support Price이라고도 한다)이 결정되며 이 용자가격이 미면시세에 대한 정의를 경작지조정법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14년까지의 기준년도기간중에 판매된 일봉도의 면화가 농민에게 안겨준, 같은 정도의 구매력을 농민에게 부여하여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용자가격(Price Support Loan)이 발표되면 농민은 수확시의 면화시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발표된 용자가격으로 상품금융회사(C.C.C Commodity Credit Cooperation)에 자기가 생각한 면화를 공탁하여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탁한 면화에 대해서는 Smith Doxie classing(혹은 Green Card라고도 한다)을 받은 후에 소통가능 유가증권인 Equity를 발급 받는다.

C.C.C.가 정부보유면화를 C.C.C. Catalogue에 의하여 최저입찰 가격으로 매각 처분할 때 이 면화를 매입한 자는 품질재검(Reclassing) 및 중량재검척(Reweighing)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중량 및 품질에 어떤 차이를 발견하였을 시는 A.S>C.S.(Agriculture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에 대하여 Claim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하여 Equity에 의한 매입면화에 대해서는 Reclassing이나 Reweighing이 전연 허용되지 않는다.

C.C.C.에 공탁하여 용자받은 면화의 시세가 회복하여 자기의 희망가격대로 되면 용자받은 면화의 시세가 회복하여 자기의 희망가격 대로 되면 용자받은 기간의 Carring Charge 즉, 금리, 및 창고료와 다소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공탁한 면화를 찾아내어 유리하게 처분할 수 있다. 만일 시세가 전연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화를 C.C.C.에 그대로 넘겨주면 된다.

3. 상품금융공사(C.C.C. Commodity Credit Cooperation)

Government Credit Agencies의 일환으로 1933년에 설립된 것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목적은

- (a) 농업소득 및 농산물가격의 안정기술 및 보호
- (b) 농산물의 수급균형보지 및 공급조절
- (c) 농산물의 질서있는 소비촉진 이 중 (a)에 주점을 두어 이 목적에 따르는 사업 즉, 농산물을 단보로 하는 용자매상, 판매, 관리등 가격기술 계획에 기초한 사업이 이 공사의 발족이래 금일까지 일관해서 계속되어 왔다.

4. 용자가격(Price Support Loan)과 Parity가격

용자가격은 Parity가격에 용자율을 승한 것이다. 현행 Food and Agriculture Act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Parity를 정의하고 있다. [면화소득의 Parity라 함은 과거 10간의 면화에 의한 평균 총소득이 평균농업소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계와 가지는 면화에 의한 총소득이다]

Parity 가격은 수정 승한 것이며, Parity가격에 용자율을 승한 것이 용자가격이 된다. 그 산출방법은 1961~1962면화년도에서 예를 들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매월 15일현재의 Parity가격이 타농산물과 함께 농무성에 의하여 월말에 발표되나 기술가격(Support Price)에 채용되는 Parity가격은 1월과 7월의 높은 쪽이 채용된다.

참고로 1961~1962면화년도 이래의 용자가격과 이에 따르는 Parity가격 및 수출보상금(P.I.K Rate)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61~1962면화년도 용자가격산정표

Parity 價格 { 毎月 15 日現在의 Parity 價格이 発表되나 (38.83) { 1 月과 7 月의 높은 쪽이 採用됨.			
修正基準價格 (12.93)		Parity 指數 (301)	
算十總한 價格 定年花 格 期間에 農의 日의 家平 農 對受均	算十農家指數 定年產受數 期間物取의 日의 價平 間全農格均	當商隨支含農 該品公私(家 月(課實에支 的利税金對私 斷子및包한物價	基一의對支 準九九諸한私 斯一商月價 間〇四品間格 (年에農 家

融資率
 × (62 %) =
 平均品質棉의融資
 價格 31.84
 (MID 1# 33.04)

※평균품질면(Average of the Crop) :

1960~1961면화년도까지는 MID 7/8 " 가 기준이 되었으나 1961~1962면화년도부터는 평균품질면이 계산기준품으로 되었다. MID 1 " 또는 MID 7/8 " 등의 산정한 품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1961 1	1962 1	1963 1	1964 1	1965 1	1966 1	1967 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Parity on Aug. 7	38.83	39.25	40.27	40.75	41.76		
Loan Rate on MID 1#	33.04	32.47	32.47	30.90	29.00	21.00	20.25
P. I. K. Rate	8.50	8.50	8.00	6.50	5.75	-	-